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3. 7(토) 총 4대	
담당 부서	광역교통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손덕환, 사무관 김인규, 주무관 양은혜 • ☎ (044) 201-5045, 5056, 5057
	물류시설정보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성수, 사무관 김선욱, 주무관 곽상훈 • ☎ (044) 201-4006, 4007, 4008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‘광역교통법’ · ‘물류시설법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**[광역교통법]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·특별대책 수립 근거 마련**

**[물류시설법]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등 노후 물류창고 첨단화 기반 마련**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먼저, 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교통불편이 큰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

-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\* 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

## ②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

-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 전용차로,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·개선토록 하였다.

## ③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

-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하였다.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“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”이며,
  - “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전했다.
- 다음으로,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

- 물류창고의 경우, 그간 단순히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, 시설이 노후화\*되어 첨단 물류활동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.

\* 건축물대장 기준 7,266개 창고시설 중 약 36.3%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

- 미국 아마존,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물류기업이 물류처리 자동화 및 신선물류 등 서비스 다변화를 위해 첨단장비 및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,
- 우리도 택배 등 생활물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춰 물류창고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.
-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,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·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,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,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하여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였다.
- 세부절차 신설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,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는 인증신청 후 전담 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,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- 이를 통해, 물류센터 내 자율운송로봇, 고속 화물분류기 등 첨단 물류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택배화물의 신속한 보관·출고·하역이 가능해지는 한편,
- 사물인터넷(IoT),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센터 운영이 지능화됨으로써 물류창고 내의 다양한 첨단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## ②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지방이양

- 그간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시·도지사가 지정\*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

하고, 단지 지정 전 실수요검증은 국토부장관이 실시하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\* 100만㎡ 이상 : 국토부 장관 / 100만㎡ 이하 : 시·도지사

☞ 현재 운영·공사 중인 30개 물류단지 중 29개는 시·도지사가 지정

○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,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시·도지사로 이양하여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,

-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,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.

### ③ 물류단지 지정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 의견 청취

○ 그간 물류단지 지정 시 지역의 교통·환경 여건과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여 일부 물류단지의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

○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, 물류단지 지정 시 기존 시·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보완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 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,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광역교통정책과 김인규 사무관(☎ 044-201-5056), 물류시설정보과 김선옥 사무관(☎ 044-201-40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